

1. 개정 이유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처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체화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3 기준을 수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자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제2호”를 “처분권자는 제2호”로, “동기와”를 “동기
· 내용 · 횟수 및”으로, “및 그 결과 등을”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로,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이돌봄지
원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
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3 2호 인력배치기준 가목 자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제3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추는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u>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u> ,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